

의안번호	2203365
의 퇴 인	최기상 의원
회 답 일	2024.9.4.
추계번호	24B333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2조의2 (시·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등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지역의 폭염·한파로 인하여 폭염·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등의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2조의2 (시·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폭염·한파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)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 건수와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임금 감소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
- 첫째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폭염·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작업중지 등 조치 건수에 따라 달라지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시·도지사의 조치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둘째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한 시·도지사의 작업중지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임금 감소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영업 손실 규모 및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셋째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업 손실 및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기준 및 단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